

## 재산의 임시 분배

이 안내서는 법적 절차 비용 총당에 가정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법적 조언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아끼는 사람에게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별거 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접근이 불공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파트너는 일했던 한편 다른 파트너는 가사를 돌봤을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는 RRSP나 TFSA, 기타 투자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여했지만 다른 파트너는 기여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후 한 파트너가 공동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자기가 따로 보관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한 파트너가 더 많은 돈을 유용하여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다른 파트너는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C주 가정법은 파트너 둘 다 가정 재산을 이용할 수 있게 도우려고 “재산의 임시 분배”를 허용합니다. 이 안내서는 재산의 임시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고 누가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마리아와 마크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8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업주부이고 마크는 기술 회사에서 근무하여 연 소득이 16만 달러입니다. 또한, 마크는 저축 계좌에 약 8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프레이저 밸리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산은 40만 달러입니다.



마리아와 마크는 몇 달 전에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와 아이는 친구의 베이스먼트 스위트에 살고 있고 마크는 콘도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가정 공동 은행 계좌는 이용할 수 있지만 마크의 저축 계좌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공동 계좌의 잔금 대부분은 다 쓴 상태이고 마크는 돈을 더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양육 보조금으로 월 500달러를 받을 뿐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가정법 사건 해결에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크는 변호사를 쓰지 말고 그냥 당사자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산의 임시 분배는 “배우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재산 분할 목적상 배우자란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거나 최소 2년간 동거했음을 의미합니다.

# 임시 분배란?

일부 가정법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모든 가정법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가정 재산이나 자산의 일부를 한 배우자에게 줄 수 있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시 분배”라고 하며 해당 배우자가 법적 절차 또는 분쟁 해결에 변호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특정 사항에 대한 비용 부담에 돈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분배는 *가정법* 제89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한 배우자에게 자산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분쟁 해결 비용 부담(조정이나 중재, 협력 가정법, 육아 코디네이터 서비스 등 법정 외 절차)
- *가정법*에 따른 법원 절차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용 부담
- 가정 분쟁 해결이나 법원 신청을 뒷받침하는 보고서 비용 부담(예: 제211조 평가자 또는 사업 감정인 비용 부담에 사용 가능)<sup>1</sup>

“임시 분배”는 해당 배우자가 법적 절차 또는 분쟁 해결에 변호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특정 사항에 대한 비용 부담에 돈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분배 명령으로 마리아는 마크와의 별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적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정의 돈 일부를 사용하여 법률 자문(예: 법적 조언 또는 법정 대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임시 분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에서 “임시”명령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 전에 또는 재판 후에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입니다. 임시 명령의 의도는 일시적이지만 가정법 사건이 느리게 진행되곤 하기 때문에 대개 몇 달간 또는 때로 몇 년간 시행됩니다. 임시 명령은 실제 명령이며 다른 임시 명령이나 최종 명령으로 대체될 때까지 준수되어야 합니다.



# 임시 분배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시 분배의 주 목적은 사법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배우자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sup>2</sup>

임시 분배는 “한 배우자가 부와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통제할 시 소송에서 때로 기울어지는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법원은 언급했습니다.<sup>3</sup>

따라서 임시 분배는 배우자 간 경제적 지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자주 제공됩니다. 배우자가 본인보다 소득이 높거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높거나 둘 다인 경우 임시 분배가 법원 사건 또는 분쟁 해결 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현금 흐름이 비슷한 경우 법원이 임시 분배를 승인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sup>4</sup>

마리아와 마크의 수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크는 혼인 기간 중 저축한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임시 분배 신청은 마리아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분배는 사법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배우자 간 경제적 지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자주 제공됩니다.



“유동” 자산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정” 자산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임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시 분배는 바로 지급 가능한 은행 계좌와 투자 등 “유동 자산”에서 가장 용이합니다. 고정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법률 서비스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주택, 보석류 등이 포함됩니다(변호사가 일한 시간의 대가로 차를 줄 수는 없음).

일부 계좌는 묶여 있어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좌를 임시 분배에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RRSP나 저축 계좌에 돈 인출과 관련된 세금 벌금이나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묶인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 세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다른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정 주택이나 가정 사업을 매각한 경우 임시 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각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 가정 주택(또는 다른 부동산) 지분을 이용하는 임시 분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매각 또는 재용자가 포함됩니다(배우자가 주택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주택 매각 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본인 둘 다 유동 자산이 없거나 주택 매각 또는 재용자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분배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크는 유동 자산(가정 저축 계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계좌에서 임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법원에 콘도 매각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본인 둘 다 유동 자산이 없거나 주택 매각 또는 재용자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분배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이란?

임시 분배를 신청할 때 가정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 이 문서의 3페이지에 명시된 세 가지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하여 임시 분배가 필요함.
- 임시 분배가 다른 배우자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음(해당 사건에서 편견을 조장하지 않음).<sup>5</sup>

필요성을 보여주려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 등 본인의 재정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 분쟁 해결 또는 법원 절차의 예상 비용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분배가 다른 배우자에게 해로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의 특정 상황 및 관련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sup>6</sup> 해당 사건에서 임시 분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본인보다 소득과 자산이 훨씬 더 많음.
- 해당 사건에 복잡한 문제가 포함됨.
- 배우자가 특히 비합리적임.
- 배우자로부터 재정 관련 서류 받기가 어려움.
- 현재까지 상당한 법적 비용이 발생함. 또는
-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법률 비용 부담이 불가능함.

마리아는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재산의 임시 분배를 원하면, 본인의 재정 현황과 마크의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서 진술서”는 본인에게 있는 증거에 관한 서면 진술입니다. 선서 진술서는 변호사나 공증인, 선서 입회관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본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 등기소에 이를 도와줄 유자격 직원이 있습니다). 선서 진술서가 사실임을 맹세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한 진술서는 법정에 출석한 것과 동일한 비중이 부여됩니다.

# 법원에 임시 분배를 신청하는 방법은?

BC주 대법원에만 임시 분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정법 관련 파일이 없으면 우선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법 소송 청구 통지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임시 분배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신청 통지서와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의 사건 초기 등 대법원 사건의 여러 단계에서 임시 분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대법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구조 협회에 제한된 변호사비 내에서 변호사 주선을 요청하여 BC 법률 구조 협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둘 중 누구도 법정에서 마리아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도움을 줄 가정법 권익 대변자와 연결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권익 대변자는 [povnet.org/find-an-advocate](http://povnet.org/find-an-advocate) 의 PovNet 지도를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고 가정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유용한 리소스와 지원이 있으므로 거주지 지역 사회에 있는 지원 서비스와의 연결을 권해드립니다.

## 주석

- 1 *가정법*, SBC 2011, c 25, 제89조: “한 배우자의 이해관계에 해롭지 않고 아래 나열된 목적상 필수적임이 충족되는 경우, 대법원은 이 파트에 따라 문제가 되는 가정 재산의 임시 분배를 명령할 수 있다. (a) 가정 분쟁 해결, (b) 이 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c) 가정 분쟁 해결이나 법원 신청을 뒷받침하는 정보 또는 증거 습득.”
- 2 *Bartch v. Bartch*, 2017 BCSC 210 at para. 23.
- 3 *I.F. v. R.J.R.*, 2015 BCSC 793 at para. 192.
- 4 *T.L.L. v. J.J.J.L.*, 2016 BCSC 1353.
- 5 *Bartch* at para. 22.
- 6 *Negus v. Yehia*, 2015 BCSC 857.

# 앞으로 나아가기

관계가 깨지면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지고 가정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유용한 리소스와 자원이 있으므로 거주지 지역 사회에 있는 지원 서비스와의 연결을 권해드립니다.

가정법 문제로 기타 서비스와의 연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Rise에 연락하십시오.



RISE 공공 법률 교육 안내서는 여러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번역본은 [womenslegalcentre.ca/interim-distribution](http://womenslegalcentre.ca/interim-distribution)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캐나다 법무부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Ministère de la Justice  
Canada

- ☎ 604-451-7447
- @ info@womenslegalcentre.ca
- 📍 516 Richards St, Vancouver, BC V6B 3A2
- 🌐 womenslegalcentre.ca

저희 사무소는 Skwxwu7mesh (스퀴미시), Tsleil-Waututh (버라드) 및 xʷməθkʷəy̓əm (머스쿼엄) 네이션의 양도되지 않은 영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 저자: Gabrielle Clark | 그래픽 디자인: Nadene Rehnby  
사진: Ahousat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Nuu-chah-nulth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원주민 사진작가 Melody Charlie. [melodycharlie.com](http://melodycharlie.com).